

#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14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3월 10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·운영중인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의 위탁기간이 2022. 6. 30. 만료 예정에 따라,
- 나. 청소년 사업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1호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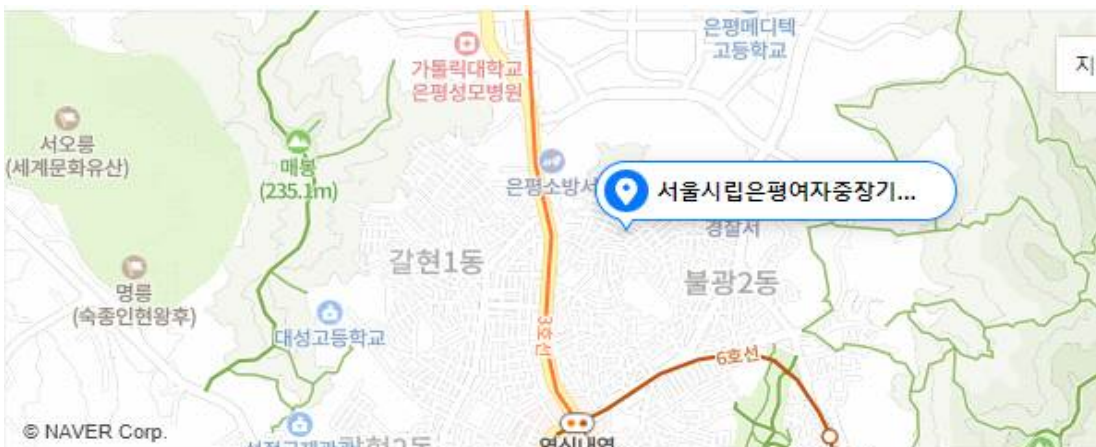
-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는 가정 밖(위기) 여성 청소년 보호 및 가정과 사회복귀,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
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위기청소년 보호사업
- 위기개입 상담, 진로지도,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
- 취업·근로 및 자립준비지원 사업
- 청소년 상담, 보호 기관·단체 연계 활동 지원
-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
-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92길 37-6(불광동) 동산홈타운
- 시설규모 : (대지) 143.99㎡, (연면적) 214.64㎡
- 주요시설 : 숙소, 상담실, 사무실 등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: 3년(2022. 7. 1. ~ 2025. 6. 30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347백만원('22년)

○ 산출근거

- 인건비 181백만원, 운영비 45백만원, 사업비 121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|  |
|--|
| <p>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|
|--|

○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
- |   |
|---|
| <p>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|
|---|

○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|  |
|--|
| <p>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</p> |
|--|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황미연 (☎ 2133-4128)